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得은 없고 失만 클 뿐이다.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예비시험 제도 도입론

1. 경과

○ 박선영 의원 등 22인의 「변호사시험법안」[1] (2009.2.2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총입학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정하고, 그 최초입학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사법시험의 그것에 준하도록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과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함.
-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 후 5년 내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위의 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2012.5.29)

○ 강용석 의원 등 33인의 「변호사시험법안」[2] (2009.3.17)

---

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0X9K0S2Z2A7A1Y8P0B7A3C1X8K2Y7

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C9N0L3Y1B7W1W7I0M1Z3J2Q3T7W

- 예비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함. 다만, 예비시험을 통과한 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비율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일정과목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함.
- 위의 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2012.5.29)

○ 강용석 의원 등 78인의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3] (2009.4.27)

- 예비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정함.
-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 3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 과목, 구분별·과목별 합격 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예비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최초의 예비시험은 2018년 이후에 시행하되, 그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1

3)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0T9E0U4P0M1F1W7Q1Q2X5L5Y8M2U4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차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위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 (2009.5.28)

○ 전국 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 제안[4] (2009.4)

-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법적 지식과 실무 활용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응시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한적으로(로스쿨 입학정원의 10~20% 범위 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2009년 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시험법안」[5]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때 "예비시험제도에 관하여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붙임.

2. 도입론의 근거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논거 1])**

- "가난한 법조인지망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2009.3.17 강용석 의원 등 33인의 「변호사시험법안」)
- "가정형편상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한 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 및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키운 자를 법조인으로 육성하기

4) 전국법과대학협의회, 「끝내 법조귀족화의 길로 가려는가?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고시계』 2009.5, 153면 이하.

5)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0T9E0U4P0M1F1W7Q1Q2X5L5Y8M2U4

위하여” (2009.4.27 강용석 의원 등 78인의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변호사 진입장벽의 제거”[6]
-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기회”**[7]

○ **일본의 예비시험 ([논거 2])**

-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실제사회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있는 등의 이유에 의해 로스쿨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음.[8]

○ **미국의 비로스쿨 트랙 ([논거 3])**

- “로스쿨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미국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제한하는 주는 전체 50개 주에서 19개에 불과 · · · 나머지 31개 주에서는 비인증 로스쿨이나 통신강좌이수는 물론 외국의 법과대학 졸업자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9]

○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논거 4])**

- “공무원인 판사 및 검사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로 임용한다고 할 때, 변호사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도 갖는다. 그런데 공무원을 뽑는 성격의 시험에 특정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10]
-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법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춘 자의 평등권을

---

6)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고시계』 2009.4, 115면.
7) 강용석, 「공정사회, 예비시험 도입이 시작이다」, 『고시계』 2011.12, 85면.
8)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위의 글, 156면.
9)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위의 글, 156면.
10)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 위의 글, 115-116면. 또한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23-2, 2011, 223-224면도 참조.

침해하는 것”[11]

○ **법과대학/법학부/법학과의 침체 방지 ([논거 5])**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학부 차원의 법학교육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한국 법학교육체제의 기울어짐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12]

II. 외국에 있는 제도이니 도입해야 하는 것인가? - [논거 2], [논거 3]에 대해

1. 일본에서는 이미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입증된 제도임.

○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극소수 인원만이 합격할 수 있는, 구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으로서, **구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던 폐해를 재생산**하고 있음.

- 수험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게다가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식, 그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어야 하므로, 시험과목이 구 사법시험보다 더 늘어남.
  ; 1차 (단답식) - 7법 + 일반교양과목
  ; 2차 (논문식) - 1차 8개 과목 + 법률실무기초과목
  ; 3차 (구술) - 법률실무기초과목
- 2011년 합격률 1.8%(합격자 116명), 2012년 합격률 3.0%(합격자 219명) (<별표 1> 참조)

○ **경제적 약자의 법조자격 취득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11)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위의 글, 156면.
12) 양평우,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고시계』 2010.11, 4면.

- “원래 법과대학원에 갈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회인을 위한 예외적 조치로 인정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우수한 법학부 학생들을 위한 특급 바이패스 코스로 전락해 버렸다.”[13]
- 2011년의 경우 합격자 연령에 있어서 20-24세가 51.7%로 절반을 넘으며, 그 연령대에서 31명이 응시하여 30명이 합격함으로써 합격률도 96.8%로 압도적임. (<별표 2> 참조)
- 2011년의 경우 합격자의 직업에 있어서 대학 재학생이 44.8%나 차지하며, 그 대학 재학생의 합격률은 92.9%로 압도적임. (<별표 3> 참조)
- 2011년의 경우 합격자 중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음. (<별표 3> 참조)
- 요컨대, **일본의 예비시험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험이기보다는, 대입경쟁을 갓 뚫고 들어와 ‘시험기술’이 뛰어난 20대의 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이라는 체계적인 법학공부를 우회하여 시험만으로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법과대학원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법과대학원 제도의 실패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큼.

-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2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어서(<별표 4> 참조), 다수의 법과대학원이 이미 고시학원으로 전락하였고,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여 폐교하는 법과대학원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우회로’까지 만들어짐으로써 법과대학원 제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특히 2011년 예비시험 합격자 중 13.8%에 해당하는 8명이 법과대학원 재학생이고, 9명이 응시하여 8명이 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이 88.9%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별표 3> 참조), 앞으로 법과대학원 재학생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비시험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점에서도 법과대학원 제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13) 마쯔모토 쯔네오(松本恒雄), 「일본의 법과대학제도와 신사법시험의 현황」, 『법학논고』 40, 2012, 852면.

-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시험이 나와서 로스쿨이 망한다"**[14]라는 주장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론의 [논거 2]가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타산지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덧붙여서, 일본에서는 신 사법시험 합격자 전원이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의 사법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사법연수원에서의 일괄 연수가 폐지되고 그 연수까지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한다면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실무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발생함.

2. 미국 제도의 특수한 맥락을 명심하여야 함.

○ 미국의 비 로스쿨 트랙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에서, **연방제**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연방 차원의 'ABA 등의 공인을 받은 로스쿨 졸업자' 이외에 '각 주 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시험위원회의 공인을 받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고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산물임.
- 외국에서 일정한 법학 공부를 하고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국의 기준에서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임.
- 게다가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14) 米倉明, 「「予備試験」出デテ法科大学院亡ブ」, 『戸籍時報』 637, 2009의 제목.

대해 배려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가 양성제도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음.

○ 미국의 제도는 원래 **도제 시스템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다가 1930년대 이후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성격이 강함.

- Law Office Study 경력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도제 시스템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미국의 사례는, **연방제를 취하지 않고 있고, 국가에 의해 로스쿨의 인가 및 평가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서 한국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인 과제로 부각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시험이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 않고, 도제 시스템에 의한 변호사 양성의 경험이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는 단순한 참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

○ **오히려 미국에서도 오로지 ABA 공인을 받은 로스쿨의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주가 16개주**[15]나 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거가 되는 것임.

○ 따라서 예비시험 제도 **도입론의 [논거 3]도 설득력이 없음.**

III. 과연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제도인가? - [논거 1]에 대해

○ **사법시험은 이미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제도가 아님.**

---

15) Arkansas, Delaware, Georgia, Idaho, Indiana, Iowa, Kansas,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w Jersey,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klahom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 대학 졸업 후 평균 5년 이상 시험공부만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임. (<별표 5> 참조)
- 고졸 이하의 학력인 사람은 합격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시험임. (<별표 6> 참조)

○ **<u>예비시험은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음.</u>**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동등한 학식, 그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음.
-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시험이 되게 하려면 응시자격에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됨. 일본에서도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경제적 약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경제적 약자’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그 방안은 채택되지 못하였음.
- 그렇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1차에서 7법 + 일반교양과목, 2차에서 1차 8개 과목 + 법률실무기초과목, 3차에서 법률실무기초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는, 사법시험보다 무거운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그 합격인원은 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격률 또한 사법시험보다 높아지기 어려울 것임. (<별표 7> 참조)
- 그렇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험기술에 능한 이른바 ‘상위’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어버릴 것임.
- 진정한 ‘경제적 약자’에게는 ‘고시낭인’ 문제로 대변되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더욱 심각한 형태로 강요하게 될 것임.

- 이런 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은,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추진해 온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음.

○ 변호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음.**

-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정원의 5% 이상**을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16)]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상당수가 '성적미달'로 장학금 수여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전 과목 엄격한 상대평가라고 하는, 전 세계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로 하여금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게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경제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16) 교육인적자원부, 위의 「심사기준」, 8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1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결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정원의 6%(125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2009.2.25, 4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경제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임.

Ⅳ. ‘문호개방’을 통해 발전적인 해법을 찾아야 - [논거 4], [논거 5]에 대해

○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퇴행적인 방향**임.

-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 변호사시험이 완전한 자격시험이 되지 못한 채 그 합격자수에 대한 통제가 끊임없이 기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비시험 제도를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합격률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예비시험 응시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상당수가 교육이 아니라 시험에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호개방' - 총입학정원 제도의 폐지 및 인가기준 완화**

-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로스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총입학정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총입학정원 제도로 인해 **'인가를 받기 위한 무한경쟁'**이 당연시됨으로써 지나치게 격상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 2003년 8월 현재 ABA(미국법률가협회)의 인증을 받은 미국 로스쿨 183개교 중 한국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2인,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로스쿨은 전체의 6.6%인 12개교에 불과.[17)]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2인,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 실무가교원 5분의 1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전체의 31%인 21개교에 불과.[18)]
  ; 다시 말해, 미국 로스쿨의 93.4%와 일본 법과대학원의 69%는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음.
-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다수의 법과대학/법학부가 인가를 받게 되어, 예비시험 제도 **도입론의 [논거 5]는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임.

○ **변호사시험의 '문호개방'**

- 변호사시험을 다른 자격시험인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에 관한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 90% 전후인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함.
- 변호사시험이 완전한 자격시험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의 우회

17) 대법원,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 공개토론회(2003.7.25) 결과보고서 -』, 2003, 263-275면 참조.

18) 김창록, 「일본 사법개혁 논의의 경과와 현황 - 법과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司法制度比較研究會, 『司法改革과 世界의 司法制度 [I]』, 韓國司法行政學會, 2004.12의 「<자료 3> 법과대학원 인가교」 참조.

로'가 아니라 국제화 시대의 '보완재'로서 외국의 변호사 또는 외국의 로스쿨 졸업자에게도, 미국과 마찬가지의 LLM제도 혹은 다른 국가시험과 마찬가지의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판 · 검사 자격의 '문호개방'**

- 예비시험 제도 **도입론의 [논거 4]**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의 '문호개방'을 통해,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제도를 실효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당 부분 대처할 수 있음.
- 하지만, '위헌론'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처를 위해서는, **외국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판 · 검사 자격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하는 폐쇄적인 자격요건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정 기간 이상의 법학교수 경험자 등, 실질적으로 판 · 검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V. 맺음말

○ 초기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으며,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은 '시험'으로부터 '교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지금 필요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음으로써,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임.

- **“국가,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의 역사적 · 사회적 맥락과 ‘로스쿨 시스템’의 총체적인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로스쿨 시스템’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는 일임.

<별표 1> 일본 예비시험 합격률

	출원자	수험자	최종합격자	**합격률(%)**
2011	8,971	6,477	116	**1.8**
2012	9,118	7,183	219	**3.0**

<별표 2> 2011년 일본 예비시험 합격자 - 연령별[19)]

연령별	응시자수	최종 합격자	최종 합격률	최종합격자 중 비율
20~24세	**31**	**30**	**96.8%**	**51.7%**
25~29세	**4**	**4**	**100.0%**	**6.9%**
30~34세	16	11	68.8%	19.0%
35~39세	14	4	28.6%	6.9%
40~44세	11	5	45.5%	8.6%
45~49세	4	2	50.0%	3.4%
50~54세	2	1	50.0%	1.7%
55~59세	2	0	0.0%	0.0%
60~64세	1	1	100.0%	1.7%
합계	85	58	68.2%	100.0%

19) 마쯔모토 쯔네오(松本恒雄), 「일본의 법과대학제도와 신사법시험의 현황」, 『법학논고』 40, 2012, 844면.

<별표 3> 2011년 일본 예비시험 합격자 - 최종학력별[20]

최종 학력별	응시자수	최종 합격자	최종 합격률	최종 합격자 중 비율
대졸	**38**	**20**	**52.6%**	**34.5%**
대학 재학	**28**	**26**	**92.9%**	**44.8%**
법과대학원 졸업	3	0	0.0%	0.0%
법과대학원 재학	**9**	**8**	**88.9%**	**13.8%**
법과대학원 중퇴	1	0	0.0%	0.0%
법과대학원 이외의 대학원 졸업	4	2	50.0%	3.4%
법과대학원 이외의 대학원 중퇴	2	2	100.0%	3.4%
합계	85	58	68.2%	100.0%

<별표 4> 일본 신사법시험의 실태

연도	수험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기수자 합격률	미수자 합격률	응시년도 졸업생 합격률	응시년도 기수자 합격률
2006	2,091	1,009	**48.3%**	48.3%	—	48.3%	48.3%
2007	4,607	1,851	**40.2%**	46.0%	32.3%	39.3%	47.1%
2008	6,261	2,065	**33.0%**	44.3%	22.5%	36.9%	51.3%
2009	7,392	2,043	**27.6%**	38.7%	18.9%	35.0%	48.7%
2010	8,164	2,074	**25.4%**	37.0%	17.3%	33.0%	46.4%
2011	8,765	2,063	**23.5%**	35.4%	16.2%	32.5%	41.8%
2012	8,387	2,102	**25.1%**	36.2%	17.2%	32.9%	43.2%

20) 위의 글, 845면.

<별표 5> 사법연수생 연령구성[21]

입소연도	기수	연 령 별 (입소당시 기준)				계	평균 연령
		24세 이하	25-27세	28-30세	31세 이상		
1983	14기	43	110	71	87	311	28.45
1984	15기	57	107	56	79	299	28.01
1985	16기	71	100	76	60	307	27.61
1986	17기	147	86	54	22	309	25.63
1987	18기	131	83	49	33	296	25.71
1988	19기	119	81	56	47	303	26.31
1989	20기	74	110	61	59	304	27.31
1990	21기	79(26.3)	105(35)	60(20)	56(18.7)	300	25.72
1991	22기	57(19.2)	127(42.8)	53(17.8)	60(20.2)	297	27.52
1992	23기	72(24.9)	94(32.5)	69(23.9)	54(18.7)	289	27.35
1993	24기	39(13.3)	92(31.4)	80(27.3)	82(27.9)	293	28.35
1994	25기	53(18.7)	101(35.6)	80(28.2)	50(17.6)	284	27.37
1995	26기	34(11.7)	95(32.7)	90(30.9)	72(24.7)	291	28.18
1996	27기	30(9.5)	105(33.3)	100(37.7)	80(25.4)	315	28.48
1997	28기	39(7.9)	143(28.8)	142(28.6)	172(34.7)	496	29.20
1998	29기	50(8.4)	151(25.5)	163(27.5)	228(38.5)	592	29.58
1999	30기	57(8.2)	200(28.8)	208(30)	226(33)	694	29.25
2000	31기	44(6.13)	217(30.26)	223(31.10)	233(32.51)	717	29.29
2001	32기	70(8.74)	219(27.34)	237(29.59)	275(34.33)	800	29.22
2002	33기	44(4.51)	210(21.51)	293(30.02)	429(43.96)	976	31.21
2003	34기	51(5.24)	239(24.59)	301(30.97)	381(39.20)	972	29.95
2004	35기					887	30.17
2005	36기					987	29.88

21) 이 표는 2007년 2월 20일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http://jrti.scourt.go.kr/intro/situation.asp?flag=6)에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008년 2월 24일 현재, 관련 자료는 위의 사이트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또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교수, 교직원, 법관만이 회원가입"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료실" 이외의,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의 다른 사이트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별표 6> 사법시험 합격자 학력 분포[22)]

	회수	합격자수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기타
			졸	재	졸	재	퇴	졸	재	퇴	졸	재	퇴	
1981	23	289	33	47	169	36	1	-	-	-	3	-	-	-
1982	24	300	44	79	124	45	4	1	1	-	1	-	-	1
1983	25	300	38	99	91	68	-	-	-	-	2	-	1	1
1984	26	303	53	85	83	81	-	-	-	-	1	-	-	-
1985	27	298	34	100	104	60	-	-	-	-	-	-	-	-
1986	28	300	50	84	104	61	1	-	-	-	-	-	-	-
1987	29	300	125		130	43	-	-	-	-	2	-	-	-
1988	30	300	139		121	38	-	-	-	-	2	-	-	-
1989	31	300	113		151	36	-	-	-	-	-	-	-	-
1990	32	298	121		136	41	-	-	-	-	-	-	-	-
1991	33	287	102		132	53	-	-	-	-	-	-	-	-
1992	34	288	91		159	38	-	-	-	-	-	-	-	-
1993	35	288	91		132	65	-	-	-	-	-	-	-	-
1994	36	290	64		166	60	-	-	-	-	-	-	-	-
1995	37	308	95		168	45	-	-	-	-	-	-	-	-
1996	38	502	116		312	74	-	-	-	-	-	-	-	-
1997	39	604	131		370	101	-	2	-	-	-	-	-	-
1998	40	700	137		415	148	-	-	-	-	-	-	-	-
1999	41	709	120		431	158	-	-	-	-	-	-	-	-
2000	42	801	132		470	199	-	-	-	-	-	-	-	-

	회수	합격자수	대학원 재학 이상	대학(교)		3년제 이하 대학	고등학교	기타
				졸	수료 · 재 · 퇴	졸 · 재 · 퇴	졸 · 퇴	
2002	44	999	159	612	227	-	1	-
2003	45	905	168	483	254	-	-	-
2004	46	1,009	147	549	311	2	-	-
2005	47	1,001	136	489	373	1	2	-
2006	48	994	133	496	365	-	-	-
2007	49	1,011	131	483	397	-	-	-
계		13,684	3,197	7,080	3,383	7	15	2

22) 이 표는, 2000년까지는 행정자치부 (2001), 100면의 표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무부 사법시험 사이트(http://www.moj.go.kr/barexam/)-자료실-통계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별표 7> 사법시험 합격자수 및 합격률

연도	회수	출원자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최종 합격자수	최종합격률 (%)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1963	1	4,176(466)	3,450	1,471	42.64	2,115	41	1.94	41	0.98
1963	2	3,732(1,325)	2,318	1,205	51.98	2,530	45	1.78	45	1.21
1964	3	4,969(1,067)	3,770	781	20.72	1,848	10	0.54	10	0.20
1964	4	4,214(725)	3,251	461	14.18	1,186	22	1.85	22	0.52
1965	5	2,141	2,141	475	22.19	408	16	3.92	16	0.75
1966	6	2,370(423)	1,858	470	25.30	756	19	2.51	19	0.80
1967	7	2,820(430)	2,304	491	21.31	835	5	0.60	5	0.18
1967	8	2,466(161)	1,837	473	25.75	779	83	10.65	83	3.37
1968	9	2,599(396)	2,070	447	21.59	736	37	5.03	37	1.42
1969	10	2,363(372)	2,363	629	26.62	750	34	4.53	34	1.44
1970	11	2,561(511)	2,326	520	22.36	930	33	3.55	33	1.29
1970	12	2,786(408)	2,531	762	30.11	944	50	5.30	49	1.76
1971	13	2,776(709)	2,629	420	15.98	962	80	8.32	81	2.92
1972	14	3,514(377)	3,215	577	17.95	829	80	9.65	80	2.28
1973	15	4,072(503)	3,614	430	11.90	787	60	7.62	60	1.47
1974	16	4,010(376)	3,311	498	15.04	705	60	8.51	60	1.50
1975	17	4,119(452)	3,344	424	12.68	747	60	8.03	59	1.43
1976	18	4,498(376)	3,625	405	11.17	653	60	9.19	61	1.36
1977	19	4,119(452)	4,011	541	13.49	801	80	9.99	80	1.94
1978	20	5,387(488)	4,153	521	12.55	912	100	10.96	100	1.86
1979	21	5,788(479)	4,506	564	12.52	929	120	12.92	120	2.07
1980	22	6,658(502)	4,868	575	11.81	986	141	14.30	141	2.12
1981	23	7,983(523)	6,805	785	11.54	1,227	316	25.75	289	3.62
1982	24	9,272(663)	7,386	830	11.24	1,350	307	22.74	300	3.24
1983	25	9,785(723)	8,450	722	8.54	1,353	306	22.62	300	3.07
1984	26	11,600(621)	9,870	816	8.27	1,365	353	25.86	303	2.61
1985	27	11,743(706)	10,089	755	7.48	1,401	312	22.27	298	2.54
1986	28	13,635(688)	11,708	791	6.76	1,373	309	22.50	300	2.20
1987	29	14,252(711)	11,973	732	6.11	1,381	311	22.52	300	2.10
1988	30	13,568(677)	11,209	818	7.30	1,419	310	21.85	300	2.21
1989	31	13,429(773)	11,237	714	6.35	1,417	311	21.95	300	2.23
1990	32	14,365(676)	11,697	830	7.10	1,425	298	20.91	298	2.07
1991	33	15,540(771)	12,925	741	5.73	1,468	287	19.55	287	1.85
1992	34	16,424(707)	13,958	821	5.88	1,488	288	19.35	288	1.75
1993	35	18,232(759)	15,516	777	5.01	1,492	288	19.30	288	1.58
1994	36	19,006(730)	16,390	850	5.19	1,530	290	18.95	290	1.53
1995	37	20,737(803)	16,879	1,052	6.23	1,856	308	16.59	308	1.49
1996	38	22,771(1,012)	18,572	1,250	6.73	2,198	502	22.84	502	2.20
1997	39	20,551(1,166)	15,568	1,865	11.98	2,949	604	20.48	604	2.94
1998	40	20,755(1,765)	15,670	2,662	16.99	3,558	700	19.67	700	3.37
1999	41	22,964(1,786)	17,301	2,127	12.29	3,554	709	19.95	709	3.09
2000	42	23,249(2,001)	16,218	1,985	12.24	3,762	801	21.29	801	3.45
2001	43	27,625(2,351)	22,365	2,406	10.76	4,578	991	21.65	991	3.59
2002	44	30,024(2,368)	24,707	2,640	10.69	4,764	999	20.97	998	3.32
2003	45	30,146(2,658)	24,491	2,598	10.61	5,012	905	18.06	906	3.01
2004	46	18,894(2,576)	15,446	2,692	17.43	5,028	1,009	20.07	1,009	5.34
2005	47	21,585(2,395)	17,642	2,884	16.35	5,038	1,001	19.87	1,001	4.64
2006	48	21,210(2,575)	17,290	2,665	15.41	5,007	1,002	20.01	994	4.69
2007	49	23,430(2,398)	18,114	2,808	15.50	5,024	1,008	20.06	1,011(6)[23]	4.31
2008	50	23,656(2,563)	17,829	2,511	14.08	4,877	1,005	20.61	1,005	4.25
2009	51	23,430(2,274)	17,972	2,584	14.38	4,399	1,009	22.94	997	4.26
2010	52	23,244(2,337)	17,028	1,963	11.53	4,104	800	19.49	814	3.50
2011	53	19,536(2,038)	14,449	1,447	10.01	3,313	706	21.31	707	3.62
2012	54	14,035((1,269)	10,306	1,001	9.71					
합계		645,243	519,800	60,814	11.70	107,525	20,684	19.24	19,732	3.06

[자료 1] 한일 로스쿨제도의 비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원
인가의 원칙	인가주의	준칙주의
지역간 균형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 고려하여야	
총 입학정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2009년 현재 2,000명	
개별 입학정원	150명 상한	
학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폐지	법과대학원 설치 대학도 존치
전임교원	최소 20인 / 교원:학생 = 1:12 이하	최소 12인 / 교원:학생 = 1:15 이하
실무가교원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실무에 종사 / 전임교원의 1/5 이상	전임교원의 대략 20% 이상은 5년 이상 실무경험자 / 재판관 및 검찰관 기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파견
시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등	
수업연한	3년 이상	기수자 2년, 미수자 3년 이상
취득 학위	전문석사학위	법무박사?
이수 학점	90학점 이상	93단위 이상
교과목	1. 법조윤리,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을 반드시 개설	법률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 展開・先端과목을 개설 / 학생들의 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 / 법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의 도입부분도 교육 / 소수인원 교육, 법률기본과목의 수업은 50명을 표준 / 쌍방향적・다방향적이고 밀도가 높은 교육방법을 동원해야 / 충실한 교육, 엄격한 성적평가 및 수료인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입학전형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 외국어	적성시험 / 기수자에 한해 법률과

23) 2007년 최종합격자수 중 괄호 안의 수는, 1981년 및 1982년에 시국관련 시위전력을 이유로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 중, 법무부가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함으로써 추가합격한 사람들의 수이다.

	능력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활용해서는 안 됨.	목시험 실시
비법학사 등	비법학사 및 타대 출신이 각각 입학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비법학사 또는 실무 등의 경험을 가지는 자가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평가기관	대한변협 소속의 평가위원회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기관
실무수습	각 직역별로 실시	사법연수소 1년간

[자료 2] 한일 법조시험제도의 비교

	변호사시험	신사법시험
성격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험
로스쿨과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법과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 및 사법수습생의 수습과의 유기적 연계 아래 시행
관장기관	법무부장관	사법시험위원회
실시 회수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선발 예정 인원		2010년 3,000명을 목표로 함.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과목 이수	법과대학원 수료자 / 예비시험 합격자
응시제한	5년 내에 5회	5년간 3회
시험방법	선택형(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 전문법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	단답식(택일식 포함)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으로 실시 / 전문법률과목은 논문식 필기시험만 실시
시험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택1)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 전문법률과목(택1)
전문법률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공

		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합격 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단답식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단답식 및 논문식 필기시험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 / 2008년까지 단답식 1 : 논문식 4, 2009년 단답식 1 : 논문식 8
과목별 배점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 각 100점, 민사계 150점 / 논문식 : 공법계, 형사계 각 200점, 민사계 300점, 선택과목 100점
과락 점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 각 40점, 민사계 60점 / 논문식 : 각 과목 만점의 25%
법조윤리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 합격 여부만을 결정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	
예비시험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와 동등의 학식 및 그 응용능력, 그리고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 / 단답식 및 논문식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 단답식-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 교양과목 / 논문식-단답식 과목 + 법률실무기초과목 / 구술-법률실무기초과목 / 2011년부터 실시
경과조치	2017년까지 사법시험 실시. 단 2017년은 2016년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2011년까지 구사법시험 실시. 단 2011년은 구술시험만 / 각 연도마다 신구 사법시험 중 한쪽만 수험 가능 / 구사법시험 수험은 3회 제한 회수에 산입

	응시 불가. 단 2009년 1차 시험 합격자 및 2009년 이전 1,2차 시험 합격자는 일부 시험 면제되는 회까지 응시 가능. 그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회수에 포함.	
합격률	2012-87%	2006-48.35%, 2007-40.2%, 2008-33.0%, 2009-27.6%, 2010-25.4%, 2011-23.5% 2012-25.1%

[참고자료]

김창록,「변호사시험법의 쟁점과 방향」,『법과사회』36, 2009

김창록,「[시론]한국 로스쿨, 제3차 '수 파동'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논란 -」,『법과사회』39, 2010

김창록,「[시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법과사회』43, 2012